

이슈&진단

No. 406
2020. 03. 11.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 작성 오재호 / 전략정책부 연구위원
(arhan@gri.re.kr, 031-250-3139)

목 차

쟁점과 대안

- I.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 II. 청년정책 현황 및 진단
- III. 청년기본법 이후, 정책 방향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2조 -

쟁점과 대안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열악한 청년 현실이 있다.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기반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6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를 거듭한 끝에 제정되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1,463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있다. 그간 청년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다. 이 법은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청년을 단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도 청년고용 촉진에 제한되었다. 노동 시장에서 고용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갑자기 해소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취업을 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을 단지 취업 희망자로 특정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 청년은 취업뿐 아니라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주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청년과 함께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먼저 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지역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전달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청년은 정책 과정에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역량과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I.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환점으로서의 청년기본법

□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은 1,463개 법률 가운데 청년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2004년에 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목적에 제한됨
- 반면, 청년기본법은 청년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두루 정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년기본법 목적 비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목적	청년기본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함

<청년기본법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세울 근거임

- 청년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지원 재원 확보, 정책 홍보 및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회 법안 발의 3년 7개월 만에 제정

- 2014년 3월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함
 - 2015년까지 청년발전기본법안 3건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함
-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한 후 2019년까지 10건 통합안을 발의함

<국회 청년기본법안 처리 의안 및 주요 내용>

제안일자	의안명	주요내용
2016.5.30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의원 등 122인)	·청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을 규정
2016.8.17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 의원 등 10인)	
2016.8.24	청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등 10인)	·청년을 연령과 함께 정의
2016.12.2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 의원 등 12인)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의무화
2017.4.13	청년기본법안 (박주민 의원 등 26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이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위원회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2017.6.30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강창일 의원 등 12인)	
2018.2.19	청년기본법안 (채이배 의원 등 11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함
2018.5.21	청년기본법안 (이명수 의원 등 18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018.11.30	청년발전지원법안 (신보라 의원 등 14인)	
2019.11.28	청년기본법안 (대안)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거쳐 실현한 중앙정부 법

○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청년조례를 제정함

-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시기를 달리하여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5년 간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조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타 지자체 조례를 단지 옮겨 놓는 한계를 드러냄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표준으로 적용하거나 청년 연령을 제각기 달리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청년 연령	지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위임(12)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서울강동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은평구, 서울도봉구, 서울관악구, 서울금천구, 부산서구, 수원시, 청주시
15~39세(1)	충청북도
18~34세(5)	충청남도, 고양시, 청양군, 아산시, 부산광역시
18~39세(7)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당진시, 홍성군, 부여군, 화순군
19~34세(4)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시흥시
19~39세(1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천시, 인천남구, 광주동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 안양시, 과천시, 충주시, 완주군, 여주시
19~49세(2)	장흥군, 곡성군

자료 : 허필윤(2018).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에 관한 고찰-청년 기본조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77호.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의무화

□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

-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
 - 청년 발전, 청년 참여 및 의견 수렴, 공정한 기회보장,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함
- 청년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함께 강조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청년정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은 정책 시행에 따른 추진 실적과 시행 계획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함
-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무총리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함

□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시책 수립을 의무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정함
 -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 청년 대표자를 포함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일자리, 역량개발, 주거, 복지, 금융,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청년 권익을 늘려나가는 시책을 추진해야 함

<청년정책 추진체계>



자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방향이 분명한 청년기본법

□ 사회적인 가치를 근거로 청년 성장과 자립에 주력하는 선진국 청년법

- 독일은 단일법체계 없이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여 정책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 1922년 국제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을 토대로, 1961년 개정한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을 거쳐 1990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을 도입함
 - 연방가정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아동(14세 미만), 청소년(14~18세 미만), 청년(18~27세 미만)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함
 -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오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아동 및 청소년강화법을 개정하여 통합과 참여에 초점을 두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

<독일 연방가정부 조직도>



자료 : 독일 연방가정부(BMFSFJ, <https://www.bmfsfj.de>).

- 일본은 2009년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여 아동(0~18세 미만)과 청년(18~30세 미만) 지원정책을 명시함
 -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존중, 차별 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함

- 핀란드는 2006년에 제정한 청년법(Youth Act)을 근거로 청년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시민권과 권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목적은 공동체, 연대, 형평과 평등, 다문화주의와 국제주의, 건강한 생활 양식, 삶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근거로 함

<해외 주요국 청년 관련법 현황>

국가	청년 관련법	주요 내용
핀란드	청년법(Youth Act, 2006)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2010)	29세 미만 청년의 자립
오스트리아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연방청년진흥법(Federal Youth Promotion)	14~24세 및 30세 미만 청년의 고용, 학습, 참여, 삶의 질 개선
아일랜드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2001)	15~24세 청년 직업능력 개발
독일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 중 제8권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18~27세 미만 청년 지원 (법전 제2, 3권에서 청년을 포함한 일반 고용정책)
프랑스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18~25세 청년(연령규정) 16~25세 청년(직업교육)
일본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	18~30세 미만 청년의 자립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2016).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기후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연구』 재구성

□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면서 달라지는 시대정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원칙들이 등장함
- 해외 선진국 청년 관련법은 단순한 빈곤 극복을 넘어 개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폭넓은 사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개선되어왔음을 주목할 만함
- 산업 전반에 지능정보화가 확산하면서 근면, 성실,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기존 직업 가치보다 합리, 실용, 권리와 행복이 시대 정신으로 대두함
- 지금 청년은 노동만 아니라 학습, 문화, 예술, 여가, 소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을 실현함

Ⅱ. 청년정책 현황 및 진단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는 추세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은 상황

□ 전국 10명 가운데 2명(24%)은 청년

- 2019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의하면 전체 인구 5,184만 명 가운데 청년(15~34세) 인구는 1,263만 명으로 24%를 차지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은 90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4천 명 감소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청년 2명 중 1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함
 -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3개월이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468만 명으로 조사됨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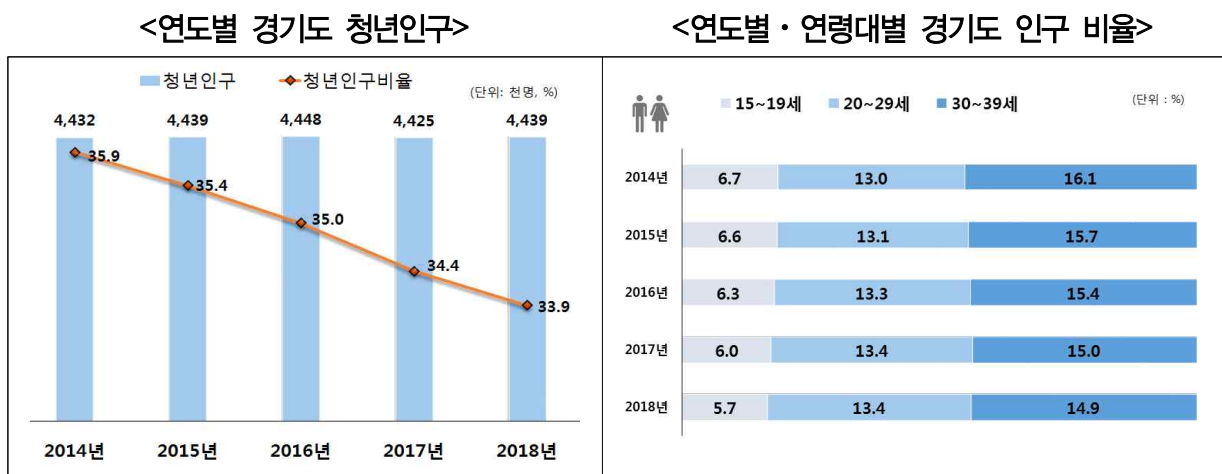
	2018. 5				2019. 5							
	청년층 인구	15~19 세	20~24 세	25~29 세	청년층 인구	증감	15~19 세	증감	20~24 세	증감	25~29 세	증감
<전 체>	9,157	2,775	2,961	3,421	9,073	-84	2,639	-136	2,925	-37	3,509	88
○ 경제활동인구	4,368	225	1,464	2,678	4,390	22	234	9	1,430	-35	2,727	49
- 취 업 자	3,908	205	1,301	2,402	3,953	46	217	12	1,260	-40	2,476	74
- 실 업 자	460	20	164	276	437	-23	17	-4	169	6	251	-25
○ 비경제활동인구	4,789	2,550	1,497	743	4,683	-107	2,405	-144	1,495	-2	783	39
○ 경제활동참가율	47.7	8.1	49.5	78.3	48.4	0.7	8.9	0.8	48.9	-0.6	77.7	-0.6
○ 고 용 률	42.7	7.4	43.9	70.2	43.6	0.9	8.2	0.8	43.1	-0.8	70.6	0.4
○ 실 업 률	10.5	9.0	11.2	10.3	9.9	-0.6	7.1	-1.9	11.8	0.6	9.2	-1.1

자료 : 통계청(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경기도 10명 가운데 3명은 청년이며, 높은 남성 비율

○ 2018년 경기도 청년 인구(15~39세)는 44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1,300만 명)의 3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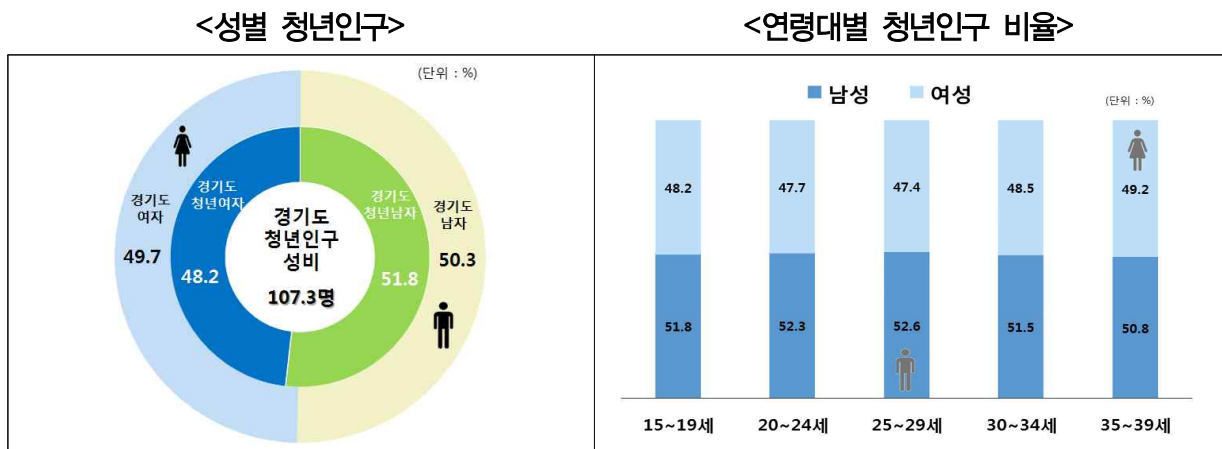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 17.9%, 40~49세 17.5%, 50~59세 16.4%, 30~39세 14.9%, 20~39세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남



자료 : 행정자치부(2019). 『주민등록인구통계』.

○ 청년 가운데 남자는 230만 명(52%), 여자는 214만 명(48%)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만 6천 명 많음

- 전체 여성 비율에 비해 경기도 청년 여성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남



자료 : 행정자치부(2019).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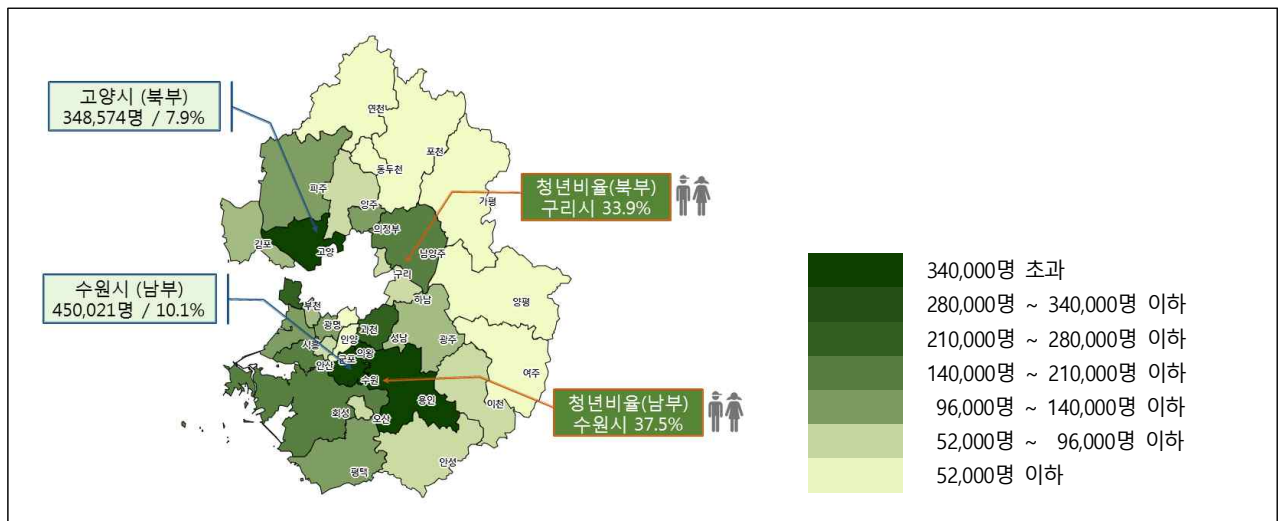
□ 10명 중 8명은 경기남부, 2명은 경기북부에 거주

○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나타남

- 경기남부 남성 청년 인구는 75.6%, 여성 청년 인구는 75.2%인 한편, 경기북부 남성 청년 인구는 24.4%, 여성 청년 인구는 24.8%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명)가 거주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7.9%(35만 명), 용인시 7.7%(34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경기도 청년인구>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9). 『2019년 경기도 청년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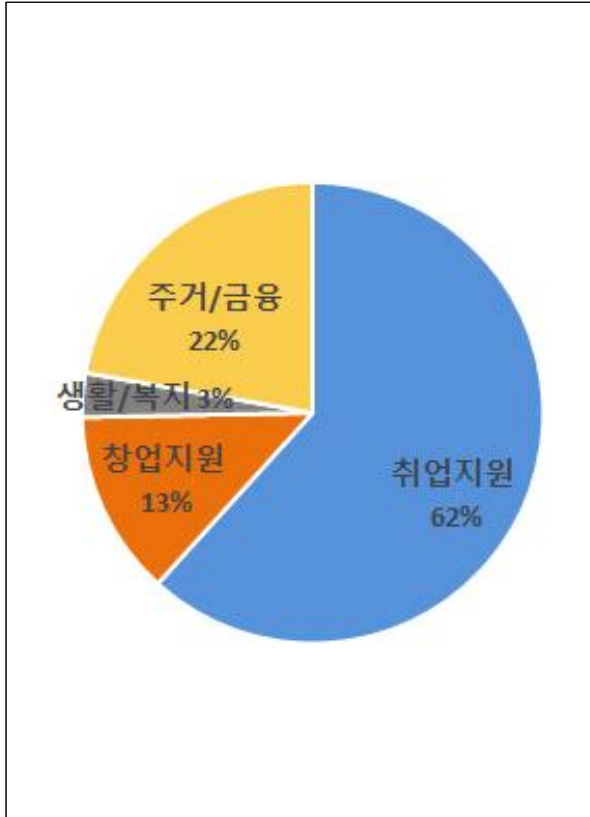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21개 부처에서 162개 청년정책 시행

□ 취업지원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

○ 정책사업 수를 기준으로 정부는 취업지원 62%, 창업지원 13%, 생활/복지 3%, 주거/금융 22% 순으로 정책을 추진함

○ 고용노동부가 32개(20%) 사업을 담당하고, 교육부 21개(13%), 국토교통부 20개(12%), 외교부 16개(10%), 중소벤처기업부 16개(10%) 순으로 나타남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중앙정부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현황>

담당 기관	사업 개수	비율
고용노동부	32개	20%
교육부	21개	13%
국토교통부	20개	12%
외교부	16개	10%
중소벤처기업부	16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개	5%
농림축산식품부	8개	5%
보건복지부	5개	3%
여성가족부	5개	3%
문화체육관광부	4개	2%
산업통상자원부	4개	2%
해양수산부	4개	2%
환경부	4개	2%
병무청	3개	2%
행정안전부	3개	2%
국방부	2개	1%
금융위원회	2개	1%
기획재정부	2개	1%
농촌진흥청	1개	1%
산림청	1개	1%
한국장학재단	1개	1%

□ 청년 직업능력과 구직활동 지원에 초점

-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함

<취업지원 분야 중앙정부 주요 사업>

주요 정책	사업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을 위하여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생애 1회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자 특성을 진단하여 최장 1년간 상담, 진단, 경로설정(1단계), 직업훈련, 일경험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
내일배움카드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직무경쟁력을 강화 -미취업자는 (재)취업 및 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 창업분야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지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음

<창업지원 분야 중앙정부 주요 사업>

주요 정책	사업 내용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에게 지원금(최대 1억원) 등 창업 전과정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스마트벤처캠퍼스	앱/웹, 콘텐츠, SW분야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최대 1억원)과 프로그램 지원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 주거/금융 분야에서는 우대금리 청약통장,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한 비용부담을 낮추는 데 비중을 둠

<주거 및 금융 분야 중앙정부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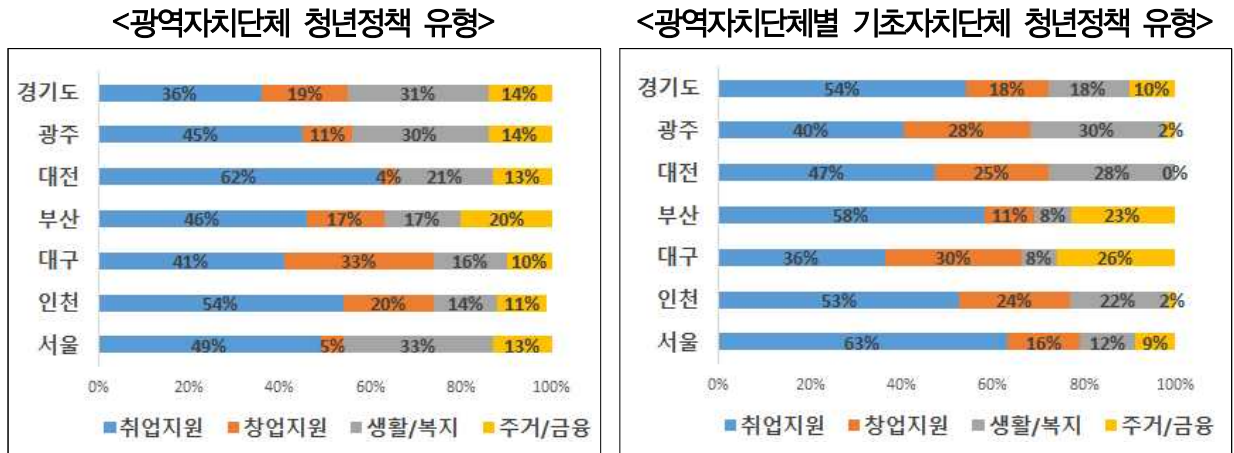
주요 정책	사업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2년 이상시 3.3%)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신혼부부·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제공(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단독세대주에게 저리(2.3%~2.7%)로 융자 지원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기본법 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은 뚜렷한 방향성 부재

☐ 청년기본법 이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내용은 대체로 유사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취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취업지원 48%, 생활/복지 23%, 창업지원 16%, 주거/금융 14% 순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함
 - 기초자치단체는 취업지원 50%, 창업지원 22%, 생활/복지 18%, 주거/금융 10% 순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함
- 청년정책이 취업지원에 집중된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 기존 법이 미취업자 사회 진입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임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재구성.

□ 경기도는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경기도는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함
- 2017년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광역자치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함
 - 청년복지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실국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함
 -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및 의결함
- 2020년 경기도에서는 21개 부서가 참여하여 42개 청년 사업을 추진함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사업 현황>

구 분	주요 추진 전략	사업 수	관련 부서 수
참 여	청년활동 지원, 참여·소통, 주거 안정	9	6
도 약	교육비 경감, 역량 교육, 인재 양성	11	9
자 립	취·창업 지원, 근로자지원	11	5
향 유	문화 활성화, 청년 공간, 노동인권	4	3
복 지	청년기본소득, 청년국민연금, 군상해보험	7	2
계	14개 전략	42	21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법제도 취지에 따라 좌우되는 청년정책

○ 법제도 취지와 내용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결정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기보다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체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정책 목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도 함

- 그동안 청년정책이 취업지원에 집중된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한 데서 비롯함

○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유일한 근거로 하다보니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대부분 미취업자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데 제한됨

<청년 관련 법 비교>

정책	주요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함 •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여건을 마련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규정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인식개선을 통한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34세 신규채용 근로자로 규정함 • 인력지원 시책 및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시책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9~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함 •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 제도, 재원을 마련하여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규정함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지방자치단체 청년 관련 조례는 정책 시행을 위한 소극적 근거에 그쳐

- 201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등의 기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마련함
- 각 지자체에서 서둘러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지역 청년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 조례 내용을 서로 옮겨다 놓기도 함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및 실태조사, 청년의 참여 등을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 추진 동력이 충분치 않았음

□ 정책에 참여한 일부가 다수 청년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고, 사회 구조와 전체 행정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경험이 부족한 것은 청년 참여의 한계

- 지자체별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나, 정책 근간(根幹)을 다루기보다 기존 정책안 홍보와 같은 지엽(枝葉)적 문제를 논하는 데 그침
 - 청년이 지역 청년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정책과 여건을 검토하는 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편적 견해만을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냄
- 청년이 기존 정책을 진단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형식적 회의 구성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분야별 청년을 대표할 만한 참여자를 모집하기보다 연령이 청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년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어려움

Ⅲ. 청년기본법 이후, 정책 방향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에 맞는 청년정책 기대

☐ 국가와 지자체는 행복을 원하는 자로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 필요

- 청년 자질(資質)을 향상해 능동적으로 살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바람직함
 -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능력과 종합교양을 두루 갖추도록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함
- 청년을 인적자원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구인구직(求人求職)이란 일차적 목표에서 더 나아가 청년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
- 청년이 정책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 오래 이어가는 정책 필요

- 청년기본법 제5조에 명시한 청년 권리와 책임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이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민주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개선을 거듭하는 자세가 요구됨
- 청년이 겪는 당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단기정책과 더불어 국가사회를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장기정책이 절실함

청년정책 기조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에 합의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를 먼저 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연속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청년을 지원할 것인가, 청년과 함께할 것인가, 청년에게 맡길 것인가 등 국가와 지자체 가치관에 따라 전체 청년정책이 좌우됨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정하기에 앞서 청년의 위상을 먼저 확립해야 함
 - 청년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회 주역(主役)으로 볼 것인가, 격려하고 도와야 할 미성숙(未成熟) 존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책 비전이 달라짐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정책 기조(基調)를 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정책 방향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음

□ 청년기본법은 한시적인 세대 이익보다 생애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

-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의 자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함
 -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주거 및 재정 독립, 생활금융 등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시대 여건이나 경제 상황에 일시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국가관과 사회관을 확립해야 함
 - 당장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도록 단기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중장기 인재양성전략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함
 - 해외 선진국 청년법은 공통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정함

법제도 개편과 정책 전달체계를 여건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시급

□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목적과 기본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함
 - 정책 대상이 중복되거나 혹은 법 취지와 달리 배제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추후 법령 보완을 고려해야 함
 - 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19~34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9~24세),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에서 정한 청년 근로자(15~24세)는 연령 중복
- 경기도는 청년기본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함
 - 청년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 의무화,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등 청년기본법 취지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역할, 자격 요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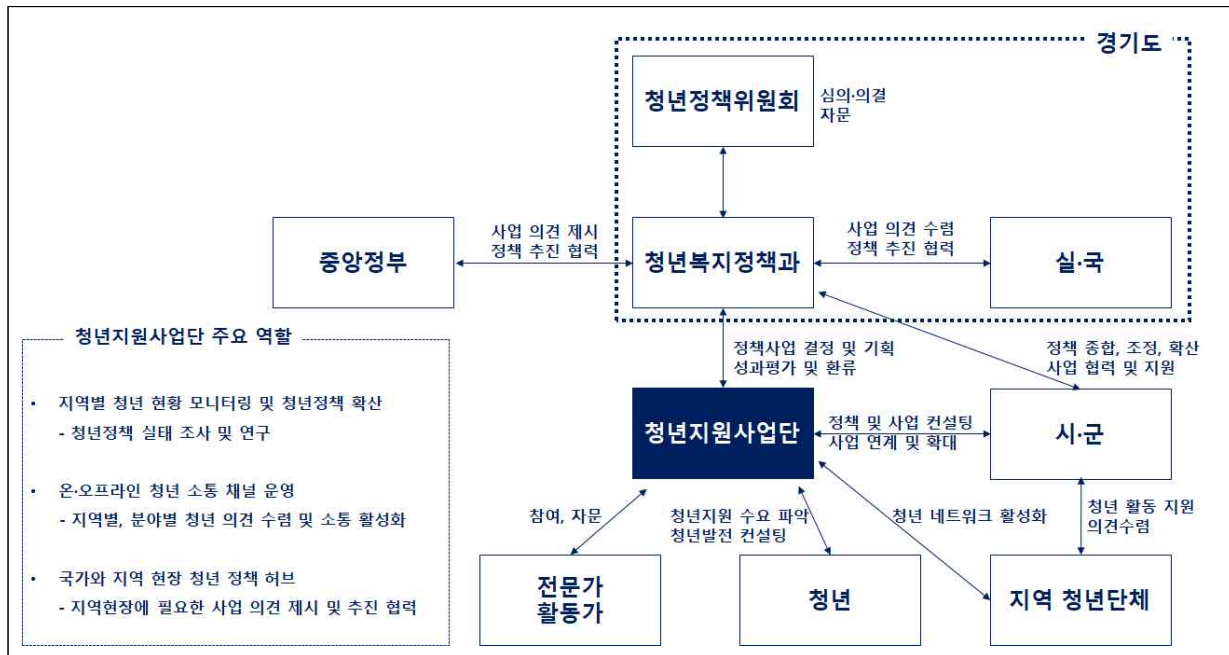
<청년기본법과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비교>

청년기본법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 필요

-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전달이 이루어지도록 기능해야 함
 - 경기도는 4월에 출범 예정인 청년지원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시·군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청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활동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관련 예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청년의 민주시민성을 제고함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추진체계(안)>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청년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 도입 필요

○ 청년 참여를 위한 전 단계로서 정책 추진 여건 및 문제를 파악하는 등 정책을 접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정책 전문가와 대표성을 갖춘 청년이 전문 실태조사 및 연구에 동참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관심사가 같은 지역 청년들이 일정 규모를 이루어 의사를 소통하도록 구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지원사업 조직을 통해 지역별 소통 구심점을 형성하고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는 등 청년이 욕구를 드러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해야 함

○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지역 정책을 상시 확인하고 의견을 내도록 온라인 소통·참여 채널 운영을 고려해야 함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① 목적 및 연령범위

-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연령)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예: ‘19세-39세’ 등)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③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실태조사)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
- (정책연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 구성
-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⑤ 기타

-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자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